

2016년도 청렴시민 감사관 운영 현황

□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

명 칭	설치근거	근거종류	권한 및 직무범위
청렴시민감사관	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지침	원자력(연) 규정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청렴시민감사관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모니터링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,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구성 및 운영 등) ④ 시민감사관 활동의 중요사항 또는 시정 및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회의를 둔다.</p> <p>제7조(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)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부패 취약분야의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의견 표명 2. 한국원자력연구원 반부패·청렴 정책에 대한 제언 3. 시민감사관의 시정·개선 권고 등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·점검 4. 기타 감사로부터 요청받은 반부패·청렴활동 참여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.</p>

명 칭	설치근거	근거종류	권한 및 직무범위
청렴시민감사관	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지침	원자력(연) 규정	1.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.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·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.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. 그 밖의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11조(활동결과 및 회의록) ① 시민감사관 활동시 도출된 모니터링 정보, 비위정보, 건의, 의견, 권고사항 등은 감사에게 수시로 제출·개진 할 수 있다.

<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관련 구체적 근거사항 >

문 서 명	문서번호	시행일자
규정공포 (청렴시민감사관 운영지침)	기획팀-934	'14. 8. 27.

<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관련 구체적 근거사항 >

문 서 명	문서번호	시행일자
청렴시민감사관 위촉	인사팀-5340	'14. 9. 12.

□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계획

운영 횟수	관련 근거
연 2회	- 2016년도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(안)(감사실-1530, 2016.03.22.)

□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실적

설치근거에 명시된 운영 횟수(A)	실제 운영 횟수 (B)	운영 실적 (B/A*100)
연 2회	연 2회	100%

<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실적 >

연번	건 명	주요 내용	운영 일자	관련 근거
1	청렴시민감사관 제1차 회의 실시	- 2016년도 4분기 테마 감사 실시계획(안) 보고 - 반부패·청렴관련 청렴 시민감사관 의견 수렴 ※청렴시민감사관의 관리 대상 시작품 범위고려 등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반영 완료	'16. 9. 29.	한국원자력연구원 청렴시민 감사관 회의 실시 (감사실-1531, 2016.09.28.)
2	청렴시민감사관 제2차 회의 실시	- 2016년도 자체 특별 감사 결과 보고 - 반부패·청렴관련 청렴 시민감사관 의견 수렴 ※청렴시민감사관의 시작 품 관리 등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반영 조치 중	'16.10. 28.	한국원자력연구원 청렴시민 감사관 회의 실시 (감사실-1452, 2016.10.24.)